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순번	공개대상자				위탁자				비고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관계)	주식명	신탁 일자	수탁 가액 (천원)	변동 가액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기재요령

-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십시오.